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eongwhi@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3) 팩스 : 044-201-718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 044-201-718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공고제2018-596호**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7월 25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샘물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이유

먹는샘물 병마개에 품목명 표시를 의무화하여 유사제품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먹는샘물 병마개에 품목명(먹는샘물)을 의무 표기토록 함(안 제14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8월 14일까지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seongwhi@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우편번호 : 30103)

3) 팩스 : 044-201-718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전화 : 044-201-718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제2018-935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한국교량개발연구소(심태영), ② 고려개발(주)(이주익),
③ (주)삼호(조남창), ④ (주)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신희정)

나. 전화번호 : ① 032-662-0997, ② 031-420-9952, ③ 02-2170-5910, ④ 02-6211-7886

2. 명칭 : 콘크리트를 충전한 소형 강상자형 횡단면을 플레이트거더형 횡단면의 상하부에 조합하여
종단면상 등단면 또는 변단면 구조를 갖도록 한 강콘크리트 합성거더 공법

3. 내용요약

<분야>

토목 / 교량 / 교량거더

<기술의 요지>

CFT(Concrete filled steel tube) 구조인 소형 강상자로 구축된 충전 콘크리트의 구속효과를 활용하여 플레이트거더의 내력인 휨압축력에 대한 강도와 연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장경간화와 구조적 안전성을 극대화시키고, 상하부 가로보와 수직보강재를 이용하여 다이아프램을 구성함으로써 비틀림 저항성능을 개선하였고 횡단면상 압축부 강재의 일부를 콘크리트로 대체시켜 일반 장경간 강상자형교보다 소요 강재량 감소효과로 경제성을 확보한 강-콘크리트 합성거더 공법

<범위>

지점부는 횡단면상 폐단면이고 지간 중앙부는 콘크리트를 충전한 소형 강상자형이 플레이트거더형의 상하부에 조합되며 수직보강재와 함께 일반 또는 콘크리트 충전 각형기둥으로 수직 보강된 구조를 상하부 가로보와 수직보강재를 조합하여 다이아프램을 구성하고 종단면상 등단면 또는 변단면의 구조형식으로 이루어진 강콘크리트 합성거더 공법

4.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48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국토교통부공고제2018-936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지정 신청